종합사회복지관 운영

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

예 산 총 괄

(단위 : 천원)

2014 최종예산 (A)	2015예산 (B)	증감 (B-A)	
			(B-A)*100/A
67,051,139	69,603,648	2,552,509	3.8%

사 업 설 명

☐ 사업목적

○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,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

○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

☐ 사업근거
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(보조금 등) 및 51조(지도·감독 등)

○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

☐ 사업내용

○ 지원대상

- 종합사회복지관 : 총 98개소 중 -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94개소, 특별지원 4개소, 시설개방 지원 98개소
- 이용인원 : 일일평균 59,341명 (개소당 평균 605명)
- 운영인력 : 총 2,018명 (개소당 평균 20명)

※ 종합사회복지관 현황

보조금		설립 주체 별					운영 주체 별			
지원	부분지원	시립	구립	SH	LH	법인	사복법인	재단법인	학교법인	사단법인
94	4	1	51	15	14	17	75	11	11	1

○ 사업기간 : 2015. 1~12.

○ ‘15년도 소요예산 : 69,603,648천원

○ 사업내용

1. 사회복지관 평가 [전액시비]
   - 평가대상 : 서울시 사회복지관 98개소
   - 사업내용 : 기관평가에 따른 평가운영위원회 및 현장평가(3인 1조, 10개반) 수당 등 지원
   - 소요예산 : 38,100천원(사무관리비)

2. 시책추진업무추진비 : 28,300천원 (‘14년 동일)

3. 사회복지법인(시설)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[전액시비]
   - 사업목적 : 법인(시설) 현황자료 실시간 관리
   - 구축대상 : 2,311개소(법인 311개소, 시설 2,000여개)
   - 구축내용 : 사회복지법인(시설) 관리카드 자료 구축, 지도점검·감사결과·민원 등 법인 및 시설 이력관리, 법정의무사항(외부 추천이사 선임 등) 이행 여부 관리
   - 소요예산 : 218,673천원

4. 사회복지관 전진대회 [전액시비]
   - 사업목적 : 사회복지관 종사자 단합, 민관네트워크 강화 및 서울시 복지정책 확산
   - 소요예산 : 50,000천원 (행사비 일부 지원)

[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: 민간위탁금 887,950천원,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8,380,625천원]

5-1. 사회복지관 종사자 기본인건비 [분담비율 시:구=9:1, 단 시립·영구임대 단지 내 복지관은 전액시비]
   - 지급대상 :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관(94개소) 총 1,932명
   - 지급내용 : 기본급, 제수당 등
   - 소요예산액 : 46,298,966천원(민간위탁금 550,585천원,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5,748,381천원)

5-2. 종사자복지수당 [분담비율 시:구=9:1, 단 시립·영구임대 단지 내 복지관은 전액시비]
   - 지원대상 :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관 정규직 직원
   - 지원기준 : 월 135,000원(근무기간 5년 미만), 월 190,000원(근무기간 5년 이상)
   - 소요예산 : 2,833,984천원(민간위탁금 38,640천원,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,795,344천원)

5-3. 안전관리인 인건비 [분담비율 시:구=9:1, 단 시립·영구임대 단지 내 복지관은 전액시비]
   - 지원대상 : 보조금지원 94개 종합사회복지관 안전관리요원
   - 지원내용 : 1인 연간 34,989,000원
   - 소요예산 : 3,061,401천원(민간위탁금 34,990천원,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,026,411천원)

5-4. 비정규직 수당 [전액시비]
   - 지원대상 : 보조금지원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종사자 493명
   - 지원내용 : 1인 월 30천원
   - 소요예산 : 177,480천원(민간위탁금 2,520천원,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4,960천원)

5-5. 사회복지관 경상운영비 [분담비율 시:구=9:1, 단 시립·영구임대 단지 내 복지관은 전액시비]

- 지원대상 :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관(94개소)
- 소요예산 : 11,721,289천원(민간위탁금 143,568천원,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,577,721천원)

5-6. 특별지원금 지원 [전액시비]

- 지원대상 : 4개소 (유락, 중림, 번동5단지, 수유)
- 지원목적 :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정수 초과로 보조금 미지원되는 4개 시설에 대해 특별지원금 지원
- 소요예산 : 855,000천원

5-7. 생명·사랑의 전화 상담소 [전액시비]

- 지원대상 : 2개소(생명의 전화상담소, 사랑의 전화상담소)
- 지원목적 : 위기에 처한 시민대상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된 상담을 통해 삶의 희망 부여 (전화, 사이버, 자살위기 개입 등)
- 운영인력 : 총 5명(생명의 전화상담소 3, 사랑의 전화상담소 2)
- 소요예산 : 163,681천원(1인 평균인건비 32,736천원)

5-8. 기능특화 운영비 [전액시비]

- 지원대상 : 기능특화복지관 26개소 (노인특화 22. 장애인특화 4) ('00년~)
- 지원내용 : 노인·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을 60% 이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기능특화 운영비 지원
- 소요예산 : 1,040,000천원(민간위탁금 40,000천원,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,000,000천원)

5-9. 기능전환 특화 운영비(마을지향복지관) [전액시비]

- 지원대상 :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종합사회복지관 29개소 ('13년~)
- 지원내용 : 15,000천원/년(16개소, 사업3년차), 20,000천원/년(13개소, 사업1~2년차)
- 소요예산 : 500,000천원

5-10. 이동목욕사업비 [전액시비]

- 지원대상 : 이동목욕사업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20개소('97년~)
- 운영인력 : 복지관별 3명 (사회복지사1, 간호사1, 운전원1)
- 소요예산 : 1,326,310천원(민간위탁금 64,479천원,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,261,831천원)

5-11. 시설 개방 지원 [전액시비]

- 지원대상 : 평일 야간 및 토·일요일 주민 대상 시설 개방 종합사회복지관 98개소
- 지원내용 : 일요일 근무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
- 소요예산 : 1,290,464천원(민간위탁금 13,168천원,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,277,296천원)

☐ 추진경위

○ **`10년 ~ '14년 :** 사회복지관 운영비 범주 구분에 의한 차등 지원

- 범주 구분 : 4가지 유형(“갑” 20%, “을” 30%, “병” 30%, “정” 20%)으로 구분
- 범주 지표 : 인적자원50(인력규모40,인건비10), 표준사업비30, 평가결과20(복지부 평가결과)
- 지원 방법 :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보조금으로 지원

☐ 2015년도 예산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3결산	2014예산(A)	2015예산(B)	증감(B-A)
계	64,957,656	67,051,139	69,603,648	2,552,509
사무관리비	-	-	38,100	38,100
시책추진업무추진비	28,346	28,300	28,300	0
전산개발비	-	-	218,673	218,673
민간경상사업보조	-	-	50,000	50,000
민간위탁금	841,028	874,983	887,950	12,967
사회복지관 기본인건비		532,686	550,585	17,899
종사자 복지수당		40,920	38,640	△2,280
안전관리인 인건비		33,852	34,990	1,138
비정규직 수당		1,440	2,520	1,080
사회복지관 운영비		143,568	143,568	0
기능특화운영비		60,000	40,000	△20,000
이동목욕사업		62,517	64,479	1,962
시설 개방 지원		-	13,168	13,168
자치단체경상보조금	64,088,282	66,147,856	68,380,625	2,232,769
사회복지관 기본인건비		44,261,203	45,748,381	1,487,178
종사자 복지수당		2,785,996	2,795,344	9,348
안전관리인 인건비		2,928,028	3,026,411	98,383
비정규직 수당		208,800	174,960	△33,840
사회복지관 운영비		11,577,721	11,577,721	0
사회복지관 특별지원(4개소)		800,000	855,000	55,000
상담소(2개소)		158,358	163,681	5,323
기능특화(25개소)		1,500,000	1,000,000	△500,000
기능전환특화		400,000	500,000	100,000
이동목욕사업(19개소)		1,352,110	1,261,831	△90,279
시설 개방 지원		-	1,277,296	1,277,296
야간요보호아동통합지원(1개소)		25,640	-	△25,640
건강복지공동체(강북, 성북)		150,000	-	△150,000

☐ 2015년도 예산 산출 근거

■ **사무관리비**		**38,100**
◦ 사회복지관 평가수당	38,100,000원 =	38,100
- 평가운영위원회의	7명 × 150,000원 × 4회 =	4,200
- 현장평가위원 평가수당	2명 × 150,000원 × 98개소=	29,400
- 현장평가위원 교육수당	30명 × 150,000원 × 1회 =	4,500
■ **시책추진업무추진비**		**28,300**
◦ 사회복지 주요업무추진	28,300,000원 =	28,300
■ **전산개발비**		**218,673**
◦ 사회복지법인(시설)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	218,673,000원 =	218,673
■ **민간경상사업보조**		**50,000**
◦ 사회복지관 전진대회	50,000,000원 =	50,000
■ **민간위탁금**		**887,950**
◦ 시립종합사회복지관 기본인건비(처우개선비 포함)	532,686,000원*103.36% =	550,585
◦ 종사자 복지수당	38,640,000원 =	38,640
◦ 안전관리인 인건비	33,852,000원*103.36% =	34,990
◦ 비정규직 수당	30,000원*7명*12월 =	2,520
◦ 시립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(추가운영비 포함)	143,568,000원*100% =	143,568
◦ 기능특화운영비	40,000,000원 =	40,000
◦ 이동목욕사업비	64,479,000원 =	64,479
◦ 시설 개방 지원		13,168
- 시설 개방 운영비	300,000원*12개월 =	3,600
- 시설 개방 인건비	184,000원*52주 =	9,568
■ **자치단체경상보조금**		**68,380,625**
◦ 사회복지관 기본인건비(처우개선비 포함)		45,748,381
- 임대아파트내 복지관 (28개소)	13,834,229,000원*103.36% =	14,299,060
- 구립, 법인직영 복지관 (65개소)	30,426,974,000원*103.36% =	31,449,321
◦ 종사자 복지수당		2,795,344
- 임대아파트내 복지관 (28개소)	907,440,000원 =	907,440
- 구립, 법인직영 복지관 (65개소)	1,887,904,000원 =	1,887,904
◦ 안전관리인 인건비		3,026,411
・임대아파트내 복지관 (28개소)	947,802,000원*103.36% =	979,649
・구립, 법인직영 복지관 (65개소)	1,980,226,000원*103.36% =	2,046,762
◦ 비정규직 수당	30,000원*486명*12월 =	174,960
◦ 사회복지관 운영비(추가운영비 포함)		11,577,721
- 임대아파트내 복지관 (28개소)	3,571,523,000원*100% =	3,571,523
- 구립, 법인직영 복지관 (65개소)	8,006,198,000원*100% =	8,006,198
◦ 사회복지관 특별지원(중림,유락,수유,번동5단지)	855,000,000원 =	855,000
◦ 상담소(2개소)	31,672,000원*103.36%*5인 =	163,681
◦ 기능특화운영비(25개소)	40,000,000원*25개소 =	1,000,000
◦ 기능전환특화(마을지향복지관)		500,000
- 1, 2차년도 복지관 (13개소)	20,000,000원*13개소 =	260,000
- 3차년도 복지관 (16개소)	15,000,000원*16개소 =	240,000
◦ 이동목욕사업비(19개소)		1,261,831
・인건비	60,272,000원*103.36%*19개소 =	1,183,646
・운영비	4,115,000원*100%*19개소 =	78,185
◦ 시설 개방 지원		1,277,296
- 시설 개방 운영비	300,000원*12개월*97개소 =	349,200
- 시설 개방 인건비	184,000원*52주*97개소 =	928,096

☐ 사업추진 절차

○ 집행절차

- 기본계획 수립(시) → 보조금 신청(시←자치구←종합사회복지관) → 보조금 집행(자치구) → 정산·보고(시←자치구←종합사회복지관)

☐ 사업효과

○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

2012년도	·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: 93개소 · 복지관 특별지원금 지원 : 2개소 · 이동목욕사업지원 : 22개소 · 상담소 지원 : 2개소 · 기능특화 운영비 지원 : 25개소
2013년도	·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: 94개소 · 복지관 특별지원금 지원 : 2개소 · 이동목욕사업지원 : 22개소 · 상담소 지원 : 2개소 · 복지건강공동체 지원 : 2개소 · 기능특화 운영비 지원 : 25개소 · 기능전환특화(마을지향복지관) : 16개소
2014년도	·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: 94개소 · 복지관 특별지원금 지원 : 2개소 · 이동목욕사업지원 : 20개소 · 상담소 지원 : 2개소 · 복지건강공동체 지원 : 2개소 · 기능특화 운영비 지원 : 26개소 · 기능전환특화(마을지향복지관) : 21개소

○ 향후 기대효과

-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시민 복지서비스의 연속성 확보
- 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을 통한 복지관 만족도 증대

☐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

○ 추진방향

-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, 운영비 및 이동목욕사업비를 차질없이 지속 지원
- 복지관 기본운영비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운영비 지원 추진
- 법인(시설) 현황자료 실시간 관리, 상시 평가 및 지도점검 체계 구축

○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계획	추진세부내용
계		69,603,648	
기본계획 수립	2015. 1.	-	
보조금 신청 및 집행	2015. 1~12	69,384,975	분기별 신청 및 교부
보조금 집행 정산	2015.12~2016.2	-	
사회복지법인(시설)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	2015.1~10	218,673	계약 및 시스템구축, 테스트

실·본부·국	부서명	담당자			
복지건강본부	복지정책과	시설지원팀장	오은미 (2133-7336)	주무관	남혜진 (2133-7338)

☐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계획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.

http://opengov.seoul.go.kr/sanction